

각종 시험 요구 시의 구비서류(제10조제3항 관련)

구분	구비서류의 종류	일 반 승진시험	특별임용 시 험	전 직 시 험	비 고
1	시험 요구서 1부	○	○	○	
2	인사기록카드 출력물 또는 이력서 1부		○		
3	인사기록 요약서 1부	○		○	별지 제30호서식
4	정원·현원 대비표 1부		○	○	
5	경력경쟁임용 사유서 1부		○	○	
6	전직 예정직과 관련된 직무기술서 1부			○	
7	경력증명서 1통		○		해당자만 제출함
8	승진 순위표 1부	○			
9	최종학력증명서 또는 학력증서 사본 1통		○	○	해당자만 제출함
10	주민등록표 초본 1통		○		
11	채용신체검사서 1통		○		· 「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 정」에 따른 의료기관이 발 행 ·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요구하 는 경우에는 최종시험 실시 전까지 구비
12	복무확인서 1통		○		현역 군인만 제출함
13	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통		○	○	해당자만 제출함
14	취업지원 대상자 증명 서		○		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제 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취 업지원 대상자만 제출함
15	학교생활기록 관계서류		○		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제출 함

비고: 위 표의 구비서류 중 주민등록표 초본,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등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담당 공무원이 당사자로부터 제출받는 것을 갈음하여 그 내용을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고 첨부해야 한다. 다만, 당사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각 1부를 제출받아 첨부해야 한다.